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정세균 (법제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연관 법령 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안 제11조의2 신설)

법령의 조문이나 내용상 연관된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 입법정책의 통일성, 일관성, 형평성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연관 법령 개정 시 기관 간 협조 절차를 개선·보완함.

나. 의원발의법률안 검토 의견 등 법제처장 송부(안 제11조의3제4항 신설)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의견 수렴 및 조정 절차를 체계화·효율화하기 위하여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 및 관계 기관의 장은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 등을 법제처장에게도 송부하도록 함.

다. 비공개 훈령·예규 등의 법제정보시스템 등재(안 제24조의3제2항 및 제25조의2제1항)

비공개 훈령·예규 등의 적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비공개 훈령·예규 등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발령 후 10일 이내에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하고, 법제처장은 비공개사유서를 제출한 훈령·예규 등이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라. 민원인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출석 근거 마련(안 제27조의3제4항)
법령해석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 외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민원인이 직접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마. 입안지원 대상의 확대(안 제29조제1항)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에 대한 입안지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입안지원 대상을 법령안에서 훈령·예규 등의 발령안까지로 확대함.

바. 자치입법 지원 강화(안 제29조의3제4항 및 제6항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마련되는 자치법규 입안에 관한 지침을 통보하는 경우 법제처에 법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제처장은 자치법규 법제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기관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5. 6. ~ 6.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법제업무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로 하고,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연관 법령 입법과정에서의 기관 간 협조)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안의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소관 법령을 함께 개정할 필요성에 관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동일·유사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입법정책의 통일성, 일관성, 형평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소관 법령과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그 밖에 해당 법령안의 조문·용어·내용 변경 등으로 인하여 관계 기관 소관 법령의 개정을 수반하는 사항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 연관 법령을 함께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추진방법과 추진 일정 등을 포함한 연관 법령 개정추진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법제처장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입안한 법령안의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령안 주관기

관의 장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관계기관의 장 및 법제처장은 연관 법령을 함께 개정하는 경우 법령안의 입안, 입법예고, 관계 기관 협의, 제11조 제6항에 따른 평가·협의, 규제심사, 법령안 심사 등 입법절차 전반에 걸쳐 효율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중전의 제11조의2)제2항 본문 중 “해당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지체 없이[국회의 심의 일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점(始點)을 달리할 수 있다] 해당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이를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를 “이를 검토하여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한 관계 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도 그 의견을 송부하여야 하고,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검토 결과를 회신하는 경우에도 법제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제4항 중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이견 여부를 파악하여”를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 및 관계 기관의 의견을 파악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제11조의3”을 “제11조의4”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제11조의3제1항”을 “제11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24조의3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훈령·예규등이 「보안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밀 등에 해당하여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밀관리시스템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24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제처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사유가 있는 훈령·예규등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제2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등재된”을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등재되거나 송부받은”으로, “법령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훈령·예규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또는 불합리한 사항을 정한 훈령·예규등이 있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령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훈령·예규등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2.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또는 불합리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
3. 비공개사유서를 제출한 훈령·예규등이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7조의3제4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직원”

을 “관계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종전 법령해석의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9조제1항 중 “법령안의”를 “법령안, 대통령훈령안, 국무총리훈령안 및 훈령·예규등의 발령안(이하 이 항에서 “법령안등”이라 한다)의”로, “법령안에”를 “법령안등에”로 한다.

제29조의3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시행을 위한 자치법규를 지방자치단체가 제때 마련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자치법규 입안에 관한 지침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제처장에게 해당 지침에 대한 자문 등 법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법령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자문 등 법제지원을 해야 한다.

⑥ 법제처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에 따른 정비지원,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법제지원을 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제1항제5호 중 “심사·해석”을 “입안·심사·해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훈령·예규등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거나”를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훈령·예규등을 등재 또는 송부하거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3, 제25조의2 및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기관 간 협조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의3제2항, 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1일 이후 발의되는 의원발의법률안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공개사유가 있는 훈령·예규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발령된 훈령·예규등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후 3개월 이내에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업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밀 등에 해당하여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할 수 없는 훈령·예규등의 경우에는 비밀관리시스템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11조의2(연관 법령 입법과정에서 기관 간 협조)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안의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소관 법령을 함께 개정할 필요성에 관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u></p> <p><u>1. 다른 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동일·유사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입법정책의 통일성, 일관성, 형평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소관 법령과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u></p> <p><u>2. 그 밖에 해당 법령안의 조문·용어·내용 변경 등으로 인하여 관계 기관 소관 법령의 개정을 수반하는 사항</u></p> <p><u>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 연관 법령을 함께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추진방법과 추진일정 등을 포함</u></p>

한 연관 법령 개정추진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법제처장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입안한 법령안의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 관계기관의 장 및 법제처장은 연관 법령을 함께 개정하는 경우 법령안의 입안,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 제11조제6항에 따른 평가·협의, 규제심사, 법령안 심사 등 입법절차 전반에 걸쳐 효율적인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기관 간 협조)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은 예산·조직·규제 등과 관련하여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경

제11조의3(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정부 내 기관 간 협조) ① (현행과 같음)

② -----

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회 심의 일정상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신설>

④ (생략)

⑤ 법제처장은 의원발의법률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법리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의원발의법률안 소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

--- 지체 없이[국회의 심의 일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점(始點)을 달리할 수 있다] 해당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하여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한 관계 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도 그 의견을 송부하여야 하고,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검토 결과를 회신하는 경우에도 법제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

- 이를 검토하여 의원발의법률안 소관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1.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요청
이 있는 경우

2. (생략)

⑥ (생략)

제24조의3(훈령·예규 등의 적법
성 확보 및 등재 등) ① (생략)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훈령·
예규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
되었을 때에는 발령 후 10일 이
내에 해당 훈령·예규등을 법제
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법제
정보시스템에 등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령 후 10일 이내에
법제처장에게 해당 훈령·예규
등의 제명(題名)과 비공개 사유
를 통보하되, 법제처장이 요청
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령·예규
등을 문서로 보내야 한다.

<신 설>

1. 제11조의4제1항-----

2.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의3(훈령·예규 등의 적법
성 확보 및 등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다만, 훈령·예규등이 「보안업
무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
밀 등에 해당하여 법제정보시스
템에 등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밀관리시스템 등 적절한 방법
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 법제처장은 「공공기관의 정
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
항 각 호의 비공개사유가 있는
훈령·예규등이 외부로 공개되

제25조의2(훈령·예규등의 사후
심사·검토) ① 법제처장은 제24
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등재된
훈령·예규등을 수시로 심사·
검토하고, 법령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훈령·예규등으로 정
하고 있거나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또는 불합리한 사항을 정
한 훈령·예규등이 있는 경우에
는 심사의견을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③ (생략)

제27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 ~
③ (생략)

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의2(훈령·예규등의 사후
심사·검토) ① ----- 제24
조의3제2항에 따라 등재되거나
송부받은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법령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
을 훈령·예규등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2.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 또는
불합리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

3. 비공개사유서를 제출한 훈령
· 예규등이 비공개사유에 해
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③ (현행과 같음)

제27조의3(위원회의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직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 3. (생략)

<신설>

⑥·⑦ (생략)

제29조(입안지원 등 법제지원) ①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거나 법령안의 입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입법을 추진하려는 법령안에 대하여 입안지원을 하거나 법적 자문에 응하는 등 필요한 법제지원을 하여

④ -----
----- 관
계인-----

-----.

⑤ -----

-----.

1. ~ 3. (현행과 같음)

4. 종전 법령해석의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⑥·⑦ (현행과 같음)

제29조(입안지원 등 법제지원) ① -----
----- 법령안, 대통령훈령안, 국무총리훈령안 및 훈령·예규등의 발령안(이하 이 항에서 “법령안등”이라 한다)의 -----
----- 법령안등에 -----

야 한다.

② (생략)

제29조의3(자치입법 지원) ① ~

③ (생략)

<신설>

④ 법제처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법제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의3(자치입법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시행을 위한 자치법규를 지방자치단체가 제때 마련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자치법규 입안에 관한 지침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법제처장에게 해당 지침에 대한 자문 등 법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제처장은 법령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자문 등 법제지원을 해야 한다.

⑤ ----- 제4항-

-----.

⑥ 법제처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에 따른 정비지원,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법제지원을 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관계 중앙

제30조(법제정보시스템의 구축·
활용 등) ① 법제처장은 정부에
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
으로 처리 또는 제공할 수 있도
록 지원하기 위하여 법제정보시
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훈령·예규등에 관한 심사·
해석

6. ~ 9. (생략)

② (생략)

③ 법제처장은 법제정보시스템
의 구축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에게 훈령·예규등을 법제정보
시스템에 등재하거나 그 밖에
법제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정
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
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생략)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30조(법제정보시스템의 구축·
활용 등)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 입안·
심사·해석

6.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훈
령·예규등을 등재 또는 송부하
거나 -----

-----.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	
연 락 처	(044) 200 - 6543